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○ 납세의무자 ① (원칙) 수익자 ② (예외) 위탁자 -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○ (과세방식) 소득원천별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□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① (좌 동) ②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- 위탁자가 실질 수익자\* 인 경우 \*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,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･지배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○ (좌 동) □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 ○ (대상) ① ~ ④의 신탁(「자본시장법」에 따른 투자신탁 제외) 중 수탁자\* 가 선택(위탁자가 신탁을 통제･지배하는 경우 제외) \*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 ① 「신탁법」§3에 따른 목적신탁 ② 「신탁법」§78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「신탁법」§114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○ (과세방식)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수탁자에게 과세 \*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배분시 배당소득세 과세